

의안번호	제 2008 - 22 호
의 결	2008. 12. 23.
연 월 일	(제13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목 차

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1. 공청회 개요	1
2. 발표 내용	1
3. 주요 쟁점	2
4. 토론 요지	4
II.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7
1. 개요	7
2. 관련 규정	······7
3. 의견수렴 계획	8
4. 시행 일정	10
Ⅲ.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	10
1. 회의 지원	10
2. 통계분석 지원	11
3. 전문위원과 외국 양형위원과의 간담회	12
IV. 2009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	13
V. 미국 양형위원회 방문 결과 보고	19
1. 개요	19

2.	방문	내역		9
3.	방문	경과	20)

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8. 11. 24.(월) 14:00~18:40

○ 장소 : 서울법원 종합청사 형사대법정(서관 417호)

○ 참석자 : 총 130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0명, 전문위원 10명

-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 허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외 판사 20명

- 조정철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장검사 외 검사 10명

- 보건복지부 가족부, 법무부 여성아동과,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관 계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법률 소비자 연맹 관계자 등

2. 발표 내용

제 목	발표지	/토론자/답변자
● 살인/뇌물/성범죄 양형기준안 종합발표	김소영 수석전	^년 문위원
▲ 사이버지 아첨기즈아 기저드로	지정토론	김현철, 김환수
●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답변	손철우
▶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신현호, 한상희
● 기울점의 중영기군인 시경도 간	답변	김소영
●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	지정토론	이상원, 이윤상
७ ७ वन ४७/। चर्च १/७८-६	답변	김현석

3. 주요 쟁점

-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 (1)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
 - 주관적 요소인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
 - 형량범위의 중첩과 폭
 - 복수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구간이탈 허용
 - 복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집행유예 기준의 평가원칙을 객관화(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평 가 도입)

(2)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 주관적 요소인 '범행동기'의 명확화·구체화 방안
- 양형인자의 객관화·구체화 방안
- 양형 논증과정의 판결문 기재 필요

나.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 (1)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
- 유형구분이 되는 뇌물수수액
- 형량범위의 상향
- 집행유예 불가 기준의 설정 필요

(2)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 '공무·국가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로 반영
- '초범'을 감경인자에서 제외

- '3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를 '관행상 수수'(단 1회 포함)로 변경
- '뇌물 사용용도가 개인용인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제외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로 확대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을 양형인자에서 제외
-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장기간 근무, 피고인 중병,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 수반'을 제외
- '소극가담'을 제한 해석하거나, 적극가담과 구분할 필요가 없음

다. 성범죄 양형기준안

- (1)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
- 청소년, 장애인, 친족관계 범행에 대한 별도 유형 설정
- 형량범위 중첩과 구간 이탈

(2)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

- 전체적인 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감경인자를 추가 발굴할 필요
- 상해가 경미한 경우(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
- '위계·위력에 의한 범행'을 감경인자에서 제외
- '음주, 공탁'을 양형인자에서 제외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를 세분화하여, '범행 후 협박' 등을 별도 가 중요소로 추가
-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특별가중인자로 승격

● '피해의 장기간 지속, 다수 피해자 존재, 약취·감금이 수반된 경우, 추가적 피해(이사, 전학, 실직) 발생' 등을 양형인자로 추가

4. 토론 요지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1) 유형분류

- 주관적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유형분류를 하여 명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된다는 지적
- ☞ 양형기준에서 유형의 개념을 최대한 명확히 정의하고, 향후 판례 축척을 통해 의미가 보다 객관화될 수 있다고 답변

(2) 형량범위

- 형량범위가 중첩되고 폭이 넓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 형량범위 중첩과 범위 제시는 양형인자의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고, 비교법적으로 양형기준안의 형량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

(3) 양형인자

- 특별/일반인자 구별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 통계적 분석과 규범적 조정이 병행되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라도 형량범위 중첩이 필요하다고 답변
- 일반 양형인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구간이탈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
- □ 유형분류를 통한 적절한 처단형 제시라는 양형기준안의 장점을 반감 할 수 있다고 답변
- 복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이 보다 명확하여야 한다는 지적
- ☞ 양형인자 계량화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는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방식을 채택하였고, 행위책임 원칙에 기초한 평가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대부분의 사건에서 형량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답변

(4) 집행유예 기준

-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가 혼재된 경우의 평가원칙이 미흡하다 는 지적
- □ 형종 및 형량 기준과는 달리 실형과 집행유예 중 택일적 선택만이 가능한 집행유예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

나.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1) 유형분류

- 뇌물수수 양형기준안에서 '3천만 원 미만' 영역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1천만 원 미만'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지적
- ☞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범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답변
- ☞ 내부적으로는 1천만 원 미만을 별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2) 형량범위

- 형량범위를 규범적으로 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
- □ 살인범죄 등 다른 범죄와 종합적으로 형량한 규범적 조정이 필요하다 고 답변
- 뇌물범죄는 양형인자가 단순하므로 기본형은 범위로 제시하지 않고, 단일형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3) 양형인자

● '공무에 대한 피해정도'를 양형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초범'을 감경 인자에서 제외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

(4) 집행유예 기준

- '장기간 근무', '피고인 중병' 등 주관적 요소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
- □ 피고인 건강 등을 책임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예방적 관점에서 집행유예 단계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

다. 성범죄 양형기준안

(1) 유형분류

- 청소년, 장애인, 친족관계 범행에 대하여 별도 유형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
- □ 친족관계 범행의 경우 특별가중요소로 취급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 록 하였고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의 경우 이들을 취약 한 피해자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게 가중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답변

(2) 형량범위

- 특별가중인자가 복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하한도 가중되어야 한다는 지적
- 형량범위의 중첩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 살인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답변

(3) 양형인자

● '위계·위력에 의한 범행'을 감경인자로 처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이 제시

- □ 경청할 만한 지적이지만 위계·위력의 사용과 폭행·협박의 사용은 수법상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
-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공탁'등을 양형인자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

Ⅱ.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 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 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u>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u>
 <u>의견을 조회</u>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

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차 공청회 개최결과와 전문위원단 검토내용을 토대로 양형위원회 13차 회의(2008. 12. 23.)에서 수정 심의를 마친 살인범죄, 뇌물범 죄,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

나. 대상 기관 선정(안)

순 번	구분			기곤	ŀ		비고
1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 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2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3	행 정 부	법		무		부	법무실, 교정본부, 범죄예방정 책국
4		대	검		찰	청	공판송무부
5		국		방		부	법무관리관실
6		보	건	복	지	부	아동청소년정책실
7		व		성		부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8		경		찰		청	경무기획국
9		감		사		원	
10	헌법기관	헌	법	재	판	소	

순 번	구분	기관	비고
11	연구기관	한 국 교 정 학 회	
12		한 국 법 학 원	
13		한 국 법 학 교 수 회	
14		한 국 보 호 관 찰 학 회	
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6		한 국 형 사 법 학 회	
17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18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19		한 국 피 해 자 학 회	
20	유관기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21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22	변 호 사 협 회	대 한 변 호 사 협 회	
23	법 무 사 협 회	대 한 법 무 사 협 회	
24	변 호 사 단 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2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27	시민단체	경 제 개 혁 연 대	
28	경제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9		대한 YWCA 연합회	
30		전국 경제인 연합회	
31		중 소 기 업 중 앙 회	
32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3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4		한국성폭력상담소	
35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발송 : 2008. 12. 24. ~ 31.

○ 의견조회 취합 : 2009. 1. 1. ~ 30.

※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회 15차 회의(2009. 2.중순 예정) 시 보고

Ⅲ.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업무지원

1.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은 소위원회 회의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소위원회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소위원회 회의	제4차	2008.	12.	18.	10:00	○ 양형기준안 수정 검토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차	2008. 12	. 15.	14:20	○ 양형기준안 수정 검토	
1팀 회의	제20차	2008. 12	. 8.	16:00	○ 강도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2팀 회의	제12차	2008. 12	. 15.	13:30	○ 위증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무고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2. 통계분석 지원

가. 개요

○ 구체적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함 으로써 전문위원단의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지원

나, 지원 내역

○ 주무 전문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증, 무고, 횡령·배임 범죄에 관한 추가 통계분석자료를 운영지원단 통계분석과 선창민 통계분석실무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음

[1] 위증범죄

- ▶ 위증죄, 위증교사
- 전체 및 세부죄명별 종국내역 및 형량분포
- 전체 및 세부죄명별 형종, 형량 및 징역형 집행 여부에 대한 양형인자별 분산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2] 무고범죄

- ▶ 무고죄
- 종국내역 및 형량분포
- 공통인자(자수·자복 여부, 교육 정도, 자백, 반성, 전과, 공범형태 등) 및 개별인자(범행동기, 범행경위, 무고 정도, 피해 정도, 침해기간, 피해자 연령, 피해자 수, 고소취소 여부, 피해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별 형종, 형량 및 징역형 집행 여부에 대한 분산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3] 횡령·배임범죄

- ▶ 횡령범죄[횡령, 업무상횡령, 특경가법위반(횡령)]
- ▶ 배임범죄[배임, 업무상배임, 특경가법위반(배임)]

- ▶ 횡령범죄 및 배임범죄
- ▶ 사기범죄(참고용)
- 세부죄명별 형량분포 및 형량분석
- 횡령·배임금액별 형종과 형량분포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피해액에서 피해회복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 2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200억 원 미만, 200억 원 이상) (일반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2억 5천만 원 이하, 2억 5천만 원 초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 전문위원과 외국 양형위원과의 간담회

가. 개요

○ 일 시: 2008. 12. 5. 14:00 ~ 15:30

○ 장 소 : 대법원 511호 회의실

○ 외국 양형위원 : Steven L. Chanenson

- Villanova 대학 법대 교수(Villanova, PA)

- 펜실베니아 양형위원회 위원(Pennsylvania Commission on Sentencing)

○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박형관, 이주형, 최석윤 전문위원 운영지원단장

나. 진행 순서

○ 주제 발표

제 목	발표자
● 미국 양형제도의 현안과 대안	Steven L. Chanenson

○ 질의 및 응답

IV. 2009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 기획운영과

순번	구 분	내 용
1	2기 양형위원회 출범 지원 (09-기획-1)	 ○ 추진방향 - 2009. 4. 26. 제1기 양형위원회 임기만료 - 2기 양형위원회 구성 이후 상설 위원회 체제 구축 ○ 구체적 방안 - 업무현황 및 양형기준제 추진 경과 보고 - 차질 없는 인수・인계를 통한 위원회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위원회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 위원회 관련 대법원규칙, 예규 등 개정 건의
2	전문위원 지원 (09-기획-2)	 ○ 추진방향 - 전문위원의 임기만료(2009년 7월) 이후 전문위원 조직 정비 및 신규 위촉 필요 - 전문위원들의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업무 지원 필요 ○ 구체적 방안 - 전문위원 추천의뢰 및 위촉절차 시행 - 전문위원 회의 및 Work Shop 개최 - 전문위원 회의 기초자료 제공 및 지원 등 - 전문위원 자체만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용 역 또는 연구보조인력 활용
3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추진방향 - 양형기준 설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구현 -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

순번	구 분	내 용
		- 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홍보
		○ 구체적 방안
		- 제2차 양형기준안 공청회(2009. 1.하순)
	(09-기획-3)	- 위원회 주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검토
		- 대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 양형위원회 블로그를 통한 양형위원회 활동 홍보 및 여론수렴
		○ 추진방향
		- 양형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된 외국 양형위원회의 경험 습득
	외국	-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대외 홍보
	고수 양형위원회와	○ 구체적 방안
4	의 교류	- 양형위원회 위원장의 미국 양형위원회 방문(2008. 11. 29. ~ 12.
	(09-기획-4)	7.)을 계기로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및 워싱턴 D.C. 양형위원회
		등과의 지속적 교류・협력 증대
		- 외국 양형위원회 위원 초빙 간담회, 심포지엄 개최 검토
		- 양형위원회 대외 홍보를 위한 영문 브로슈어 작성 및 배부
		○ 추진방향
		-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 발간 및 국회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연간보고서 발간	○ 구체적 방안
5	및 국회보고	- 연간보고서 기재 사항 정리
	(09-기획-5)	- 연간보고서 및 2009년도 사업계획 기안
		- 위원회 결의 및 최종확정
		- 연간보고서 발간 및 배부
		- 시행 일시 : 2009. 3.

순 번	구 분	내 용
6	양형기준 홍보 (09-기획-6)	○ 추진방향- 양형기준제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양형기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구체적 방안 - 다양한 홍보수단을 선택하여 국민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확대 • 라디오 방송 • 신문 • 지하철 광고 등 검토 • 양형기준을 홍보하는 리플릿 등 인쇄물을 제작하여 법원 민원실, 수사기관 • 교정기관 • 법률상담기관 등 형사사법 관련기관에 배부 - 지속적 홍보를 통해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을 도모
7	양형위원회 각종 자료 관리 (09-기획-7)	 ○ 추진방향 - 양형위원회의 계속적인 회의 개최, 전문위원의 양형 관련 연구의 진행 등에 따라 각종 회의자료, 보고서, 연간보고서 등 각종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 ○ 구체적 방안 - 양형위원회에서 생성된 자료 및 외부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양형위원회 자료등록 대장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또한 해당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전자저장 매체로도저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 자료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구 보존함 - 등록자료의 배부 및 이용은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운영지원단장 또는 기획운영과장의 확인 하에 실시

▶ 자료조사과

순 번	구 분	내 용
1	양형자료조사 (09-자료-1)	 ○ 추진 방향 - 추가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구체적 방안 - 제2기 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또는 설정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미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실시 - 새로운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 운용에 따른 양형자료조사 방식개선 - 양형자료조사팀에 대한 업무지원 및 점검
2	양형조사표 개선 (09-자료-2)	 ○ 추진방향 - 양형조사표의 수정, 개선을 통한 양형자료조사의 신뢰도 제고 ○ 구체적 방안 - 양형자료조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조사표를 수정・보완 -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을 통해 양형조사표 수정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양형인자의 체계적 사후 관리체제 구축
3	양형자료 분석관 교육 (09-자료-3)	 ○ 추진방향 - 2009. 7. 분석관의 교체로 인한 교육의 필요성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양 ○ 구체적 방안 - 양형자료분석관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 양형인자의 확인과 평가 등 양형실무 이론 교육 - 범죄유형별 기록검토를 통한 조사표 작성 후 토의 - 교육과 함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함으로써 수행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 증진

순 번	구 분	내 용
4	양형자료분석관 업무 개선 (09-자료-4)	 ○ 추진방향 - 양형자료 분석관 제도의 운영 개선 ○ 구체적 방안 - 양형자료분석관 실무편람 발간 - 전국 양형자료분석관 간담회 개최 · 양형자료분석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 2회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 - 양형자료분석관 커뮤니티 운영 · 양형자료분석관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의견 수렴, 정보 공유를 위해 커뮤니티를 운영
5	양형기준 운영 점검 (09-자료-5)	 ○ 추진방향 -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기준 운영현황을 점검ㆍ평가 ○ 구체적 방안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각급 법원 분석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양형기준 운영 점검 시스템 구축 - 평가결과는 양형기준 수정 및 양형정책 수립에 반영

▶ 통계분석과

순 번	구 분	내 용
1	양형자료 통계분석 (0 9- 통계-1)	 ○ 추진방향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구체적 방안 - 제1기 양형위원회의 기준 설정 대상범죄(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무고)에 대한 양형자료 분석 - 제2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추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분석 - 확정사건 조사대상 범죄유형별 구분에 따른 양형 통계분석 -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원 높은 통계분석 시행(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 로짓회귀분석 등)
2	전문위원 분석 지원 (09-통계-2)	 ○ 추진방향 -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 지원을 통해 전문위원단의 연구 활동 지원 ○ 구체적 방안 - 조사된 양형자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통계분석 방법을활용한 양형 통계자료 제공
3	양형자료 분석업무 개선 (09-통계-3)	 ○ 추진방향 - 양형자료분석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양형자료의 효율적 추출 및 통계 제공 ○ 구체적 방안 - 분석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양형자료의 신속한 취합 및 추출을 통해 신뢰도 높은 통계자료 수집 - 분석업무시스템에 포함된 양형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통계분석을 적시 처리

V. 미국 양형위원회 방문 결과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 위원장의 미국 양형위원회 공식 방문을 통해 아래와 같 은 성과를 거두었음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안에 대한 대외적 홍보
 - 한미 양형위원회 상호간 교류 계기 마련
 - 미국 양형위원회 관련 각종 논의사항 및 자료 확보

2. 방문 내역

가. 시찰자

○ 양형위원회 위원장

나. 방문기간

○ 2008. 11. 29.(토) ~ 12. 7.(일)

다. 방문국가 및 지역

○ 미국 뉴욕, 워싱턴 D.C.

라. 방문기관

- 뉴욕남부연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도 소재지 : U.S. Courthouse, 500 Pearl Street,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NY 10007-1312
- <u>미국연방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u>

- 도 소재지 : Office of Public Affairs, U.S. Sentencing Commission,
 One Columbus Circle, N.E., Washington, DC.,
 United States of America, DC 20002-8002
- 워싱턴 D.C. 양형위원회(DC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 도 소재지: DC Sentencing and Criminal Code Revision Commission, 441 4th Street, NW, Suite 830 South, Washington, DC., United States of America, DC 20001

3. 방문 경과

가. 뉴욕 남부 연방법원

- 일시 : 2008. 12. 1.(월) 14:00 ~ 16:00
- 면담자 : Danny Chin 연방법원 판사
- 시찰 내용
 - 마약범죄 양형심리절차 참관
 - 양형기준의 역할과 양형기준 적용을 위한 양형심리 방법 토론

나. 양형위원회

(1)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 일시 : 2008. 12. 4.(목) 10:00 ~ 12:30
- 면담자 : Ricardo H. Hinojosa 위원장, Ms. Beryl A. Howell 위원, Judith Sheon 사무총장, Kenneth Cohen 고문 변호사

(2) 미국 워싱턴 D.C. 양형위원회

○ 일시 : 2008. 12. 5.(금) 12:00 ~ 14:00

○ 면담자 : Frederick Weisberg 위원장, Kim Steven Hunt 사무총장

(3) 토론 내용

- 양형위원회 위상과 역할
-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의 쟁점과 논의결과
- 양형기준 시행 성과 및 대내외 평가
- 양형기준 준수 여부 확인방법
- 한국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안 소개